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제 출 자	이계천 의원 외 3명
제 출 일	2022. 2. 7.	회부연월일	2022. 2. 7.

1. 개정이유

○ 논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자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4호)

나.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3조제6항)

다. 논산시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을 명시함.(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 지방자치법 제28조, 관광진흥법 제2조, 제76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